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9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232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4. 12. 18.

판 결 선 고 2015.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귀속 재산세 78,489,280원, 지방교육세 14,405,4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9

가. [redacted]([redacted]는 2012. 7. 6. 그 명칭을 '[redacted]'로 변경하였는데, 위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1970. 10. 18.경 [redacted]시 [redacted]읍 [redacted]리에 있는 [redacted]촌을 건설·운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운동장, 수영장, 공원 도로 등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9. 11.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동 산 13-17 외 43건 합계 105,887.6㎡(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년도 귀속 재산세 78,489,280원, 지방교육세 14,405,42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13.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2013. 4.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7. 6. 정관을 개정하여 회원의 자격을 '주민'일 것을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고, 마을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0조 제2항 소정의 마을회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

2) 원고는 2012. 7. 6. 정관으로 회원을 '주민'으로 한정하기 전에도 주민이 아닌 회원은 사실상 원고의 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원고 회원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그 실질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2항에 정한 마을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9

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질은 감면대상이 되는 마을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원고는 목적과 조직, 운영실태, 회원의 이용현황, 재산의 귀속관계 등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다를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원고의 경우에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2항 소정의 마을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0. 10. 18. 최초 정관을 제정하였고, 이후 총 9차례에 거쳐서 이를 개정하였는데, 2012. 7. 6. 개정하기 전의 정관(갑 제5호증, 이하 '종전 정관'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회원의 자격)
① 원고의 회원은 [redacted]리 [redacted]촌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원고에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한다.
② 전항의 토지 등의 소유는 토지 30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토지가 300㎡ 미만의 소유인 경우는 그 지상에 1가호분의 주택을 소유하고 원고가 정한 시설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③ 회원이 아닌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 및 이들로부터 토지 등을 승계한 자에 대한 회원의 가입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정한 별도의 가입비와 미납금 등을 납부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회원 승계)
① 토지 및 주택이 양도될 경우 회원의 자격은 동시에 승계한다. 다만, 양도일로부터 원고가 정한 기간 내에 양도, 양수인은 회원승계내역을 원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정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회원의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하여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회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원고가 승계 전 회원에게 청구한 모든 청구 금액 중 전 회원이 체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9

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원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회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28조(재정) 원고의 재정은 회원의 가입비, 회비, 관리비 등 각종 부과금 및 재산 처분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9조(비회원 부담금) 이사회는 향린촌 내에 원고가 설치한 공익시설을 사용하는 향린촌 거주 비회원에 대해여는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료 및 부과금을 회원과는 별도로 결정하여 징수한다.

2) 원고는 2011. 7. 22. 7월 전체이사회에서 세금절감방안에 대해 이사장이 직접 세무사와 면담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11. 10. 24. 10월 상임이사회의에서 세금절세관련계약을 A, B세무사 중 택일하여 계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1. 12. 14. 12월 상임이사회의에서 세금절세방안과 관련하여 B세무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그후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으로 2006년경부터 납부한 재산세 등의 세금의 환급을 요청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한 후 2012. 7. 6. 2012년도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정관(이하 '개정 정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회원의 자격) '동백동 향린마을'의 주민을 회원으로 한다. 제5조 삭제 제28조(재정) 원고의 재정은 회원의 가입비, 회비, 관리비 등 각종 부과금 및 재산 처분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9조(비회원 부담금) 이사회는 향린촌 내에 원고가 설치한 공익시설을 사용하는 향린촌 거주 비회원에 대해여는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료 및 부과금을 회원과는 별도로 결정하여 징수한다. (부칙 5조) 본 정관은 2006.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05. 4. 30. 정관의 정신에 따른다.

3)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2012. 6. 1.자 기준 원고의 회원명단에 대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9

피고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마을내 주소자 (개인)	마을내 주소자 (법인 등)	타 시군군구에 주소를 둔자	해외 이민자	미확인	합계
184세대	24세대	67세대	4세대	26세대	304세대

4) 원고의 인터넷카페 게시판에는 2011. 6. 4. '원고의 경우 토지 300㎡ 이상을 소유자이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 토지 300㎡ 이상을 소유하면서 나중에 입주한 자, 토지 300㎡ 미만을 소유한 자 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었고(을 제2호증), 2011. 10. 21. '향린마을에는 세입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주민임에도 원고의 회원이 될 수 없으며, 토지 300㎡ 미만의 소유자들도 의사결정권이 봉쇄되어 있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었다(을 제3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임야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되,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8호, 제11호, 지방세법 제114조에 의하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의 경우 매년 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9

1.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2012년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이 2012. 6. 1.인데 원고는 2012. 7. 6. 정관을 개정하였으므로, 원고가 감면대상이 되는 마을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정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원고가 의 정관개정시 개정 정관 부칙 5조를 통해 개정 정관이 2006.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의 부과대상인지에 대한 판단까지도 위 정관 부칙에 따라 위 2006. 1. 1.로 소급하여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종전 정관은 회원자격을 주민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토지 300㎡ 이상을 소유한 자 등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고, 주민이라도 세입자를 비롯하여 토지 300㎡ 미만을 소유한 자 등은 회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실제로도 2012. 6. 1.을 기준으로 원고의 회원 중에는 주민이 아닌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정한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9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에 적용되는 종전 정관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마을회로 볼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redacted]동 주민들 역시 세입자를 비롯한 토지 30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한 주민들은 회원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지적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소유자 등) 또는 사용자(임차인 등)가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들로 구성되는 단체를 말한다. 살피건대,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경우도 대표를 선출한 권한을 가지는 반면, 원고의 경우 토지 300㎡ 이상 소유자 등만이 회원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양자의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9

재판장 판사 이흥권

판사 나 경

판사 김광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9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임야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마을회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마을회등의 정의)

법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8. 재산세: 과세기준일
11. 지방교육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9

②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③ 이 조 및 제8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의 예를 따른다.

■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끝.